#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03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신동욱・유용원・엄태영

서천호 · 김은혜 · 최수진

최형두 • 박정하 • 안상훈

성일종 · 김기현 · 인요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 법률 제 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1.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 2.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벌칙) ①・② (생 략)	제7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u>수</u> )
<u>&lt;신 설&gt;</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
	항의 죄를 범한 자
	2.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u>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u>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
	<u>한 자</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